

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우 강 호 위원	소 속	평 창 군 의 회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임업경영과장)	일 자	질의:2000년 10월 27일 답변:2000년 10월 27일
회 의	제80회 평창군의회(임사회) 제2차 예결특위		
<p>【질의요지】</p> <p>○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 설치계획 및 설치 장소</p>			
<p>【답변요지】</p> <p>○ 우강호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산불방지 무인 카메라설치 및 설치 장소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.</p> <p>- 산불방지를 위하여 주요지점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발생에 따른 초기진화를 신속하게 실시코자하며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 장암산과, 방림면 방림리 중대갈봉중에서 선택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.</p> <p>붙 임 : 1. 무인산불감시 시스템 각 1부 2. 산불방지무인감시카메라 설치계획 1부. 끝.</p>			

산불방지 예방활동비 「단체·리장」 지급계획

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산불방지 예방활동에 기여한 「단체·리장」 활동비를 지급하므로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고 대형산불 예방으로 산지자원화와 인명피해 및 재산보호에 있음.

1.산불방지 예방활동비 지급 개요

가.지원금지급 일시 : 2000.12. 20한

○ 산불방지 예방활동 「단체·리장」 선정 지급(예정).

나.지원금 부문

단위 : 천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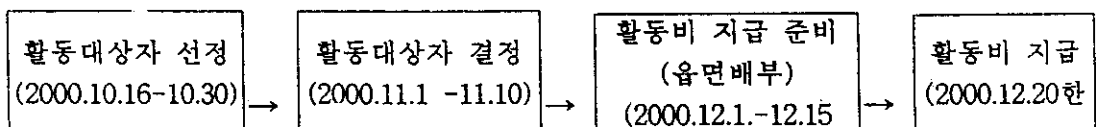
구 분	예 산 액			지급액 (예정)	활동비지급 대상자			비 고
	계	도 비	군 비		계	리장(명)	단체(수)	
합 계	36,500	10,950	25,550	38,500	203	185	18	
단 체	18,000	5,400	12,600	18,000	18	-	18	
리 장	18,500	5,550	12,950	18,500	185	185	-	

다.지급금 내용

○ 산불방지 예방활동 단체 : 단체별 지원금1백만원 지급(18개단체)

○ 산불방지 예방활동 리장 : 리장별 지원금1십만원 지급(185명)

2.활동대상자 선정 및 활동비 지급 결정



가.활동대상자 선정

- 추천권자 : 각 읍,면장
- 추천기한 : 2000.10.30한
- 추천 방법
 - 산불방지 예방활동 단체 및 리장 읍면에서 선정보고-군에서 결정
- 활동비 지급대상 「단체, 리장」

활동단체, 리장 부문	추천 대상	비 고
단 체	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한 각 읍,면별 자율방범대. 의용소방대.월남파병전우회.평창군재난 통신지원단 등	18개 단체
리 장	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한 리장.	각 읍,면별 행정리수별 리 선정

* 추천제외 대상

-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
-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
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중에 있는자
- 공사 생활에 흠결이 있으며, 사회통념상 수상후보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자.

나.활동대상(단체·리장)결정

- 각 읍,면장 추천에 의한 서류심사 결정 : 2000.11.10한

3. 행정사항

가. 산불방지 예방활동 비지급대상자 추천 : 2000.10.30한

- 읍,면에서는 각 부문별 활동비지급대상자 적정하게 추천
- 대상단체 및 리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천
- 비활동단체 이장은 추천제외
- 단체는 자율방범대, 의용소방대 등 우선 선정

나. 기타 사항은 임업경영과 문의(전화 330-2426)

붙임 : (1) 산불방지 예방활동 「단체·리장」 선정자 추천서각1부.

